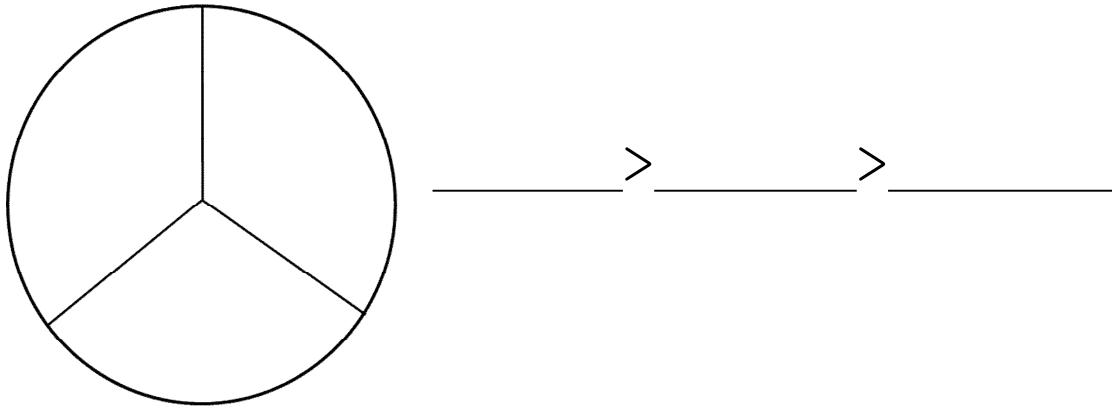


무역실무

하동호

caleb.corea@gmail.com

무역계약



1. Vienna Convention(1980)

국가간 무역거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서로 다른 관행과 법률일 것이다. UN총회의 제6차 특별회기에서 평등과 상호이익을 기초로 한 국제거래의 발전이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을 규율하되 상이한 사회적, 경제적 및 법률적 제도를 참작하는 통일규칙을 채택하는 것이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법률적 장벽을 제거하는데 공헌하며 또한 국제거래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견지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 제정되었다.

이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법으로써 정식영문명칭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이고 약칭하여 CISG(1980)이며 일명 “Vienna Convention(1980)”이라고 한다. 이것은 모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무역계약의 공통법으로써 UN의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가 1980년에 제정하였으며, 1988년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체약국 간에 발효되어 무역거래에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3월 1일부터 이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Vienna Convention(1980)에는 계약의 성립, 물품매매의 총칙,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위험이전,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한 공통규정 등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Incoterms는 1953년에 개정된 후, 1967년과 1976년 보완을 거쳐 1980년에 대폭 정비 개정되었고 1990년과 2000년에 보완 개정되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최신버전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Incoterms 2010이다. Incoterms 2010은 중전의 “정형거래 조건에 관한 국제해석규칙”에서 “국내 및 국제무역조건 사용에 관한 ICC규칙”으로 변경하여 국내거래 및 국제거래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청약과 승낙

(1) 청약(offer)의 개념

Offer란 우리말로 청약(講約)이라고 하며 매매거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시하면서 그러한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여기서 청약을 행하는 자를 청약자(offeror), 청약을 받는자를 피청약자(offeree)라 한다.

Offer란 피청약자의 무조건·절대적 승낙(unconditional and absolute acceptance)이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 청약자의 피청약자에 대한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오퍼는 확정적(definite)이라야 하며, 상대방이 승낙(acceptance)할 경우 구속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오퍼에는 일반적으로 ① 당사자의 표시 ② 오퍼 한다는 문언 ③ 물품의 명세(품명, 규격, 소재, 용도 등), 수량, 가격조건, 선적조건, 대금지결제조건, 포장과 하인표시, 보험조건 등의 매매조건 ④ 발행일자과 번호 ⑤ 유효기간(validity) 등이 기재된다.

오퍼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대방이 유효기간내에 승낙(acceptance)하면 양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성립된다.

(2) 승낙(acceptance)의 개념

Acceptance란 우리말로 승낙이라고 하며 승낙은 청약의 내용에 동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이다. Vienna Convention(1980)에서는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승낙이 된다. 침묵(silence)이나 또는 어떠한 행위도 취하지 아니하는 것(inactivity) 그 자체로서는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약(offer)에 대한 상대방(피청약자)의 승낙으로 무역계약(매매계약)이 성립되지만, 승낙의 절차를 별도로 밟지 않고서도 승낙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3) 계약의 성립방법

- 1) 승낙 : 청약의 내용에 동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행위이다.
- 2) 의사실현 : 승낙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물품인도나 대금지급 등의 계약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성립
- 3) 매매계약서 체결 :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계약 체결

(4) 반대청약

피청약자(offeree)가 청약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해서 원래의 청약자(offeror)에게 반대로 청약하는 것을 반대청약(대응청약 : counter offer)이라 한다.

반대청약(counter offer)이 발생하게 되면 원래의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원래의 청약자는 offeree가 되고 원래의 피청약자가 offeror가 된다.

※매도인의 offer 양식 : Offer Sheet (물품매도확약서), Proforma Invoice(견적송장)

① EC21 CO., LTD.

11 FLOOR, TRADE TOWER, GANGNAM-GU, SEOUL, 137-070, KOREA
TEL : +82-2-6000-1234 FAX : +82-2-6000-1235

OFFER SHEET

② Messrs.: KOG USA INC.,

③ Our Ref. YE01JR231

④ Date April 20, 2015

⑤ We are pleased to offer you on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described as follow.

⑥ Origin : Republic of Korea

⑦ Shipment : Within 30days after receipt of your L/C

⑧ Destination : MANILA, PHILIPPINES

⑨ Packing : EXPORT STANDARD CARTON PACKING

⑩ Payment : by an irrevocable negotiable LC AT SIGHT in our favor

⑪ Validity : Oct. 31, 2015

⑫ Advising Bank :

⑬ Remark :

⑭ Unit : CIF MANILA IN USD/YARD

No.	⑮ Commodity & Description	⑯ Q'ty	⑰ Unit Price	⑱ Amount
	65 PERCENT COTTON, 35 PERCENT NYLON RIPSTOP 57INCHES COLOR BREAKDOWN			
	ARMY	17,410	US\$2.65	
	BLACK	3,525	US\$2.65	
	CHINO	11,880	US\$2.65	
	Total	32,815		US\$86,959.75

Yours Very Truly.

⑲ Accepted by

⑳

EC21 CO., LTD
Proforma Invoice

Messrs :

No. :

Date :

We are pleased to make the proforma invoice of the under mentioned articles as per conditions and details described as follows :

HS Code No.	Commodity & Descriptions	Quantity	Unit Price	Amount
Unit : FOB Busan in USD/PC				
Total				

Original :
Packing :
Shipment :
L o a d i n g :
Port :
Destination :
Payment :
Insurance :
Inspection :
Remarks :

Thanks for your valued order. Please sign this proforma invoice and return into us an acknowledgement by fax.

Accepted by :

Yours faithfully.

3. 주문과 주문승낙

(1) 주문과 주문승낙의 개념

P/O는 Purchase Order의 약어로서 구매청약(buying offer)의 기능과 주문서(order sheet)의 기능이 있다. 청약(請約)은 매도인 뿐 만 아니라 매수인도 할 수 있다. Offer Sheet와 Proforma Invoice가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송하는 청약의 서식이라면 Purchase Order는 그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발송하는 청약의 서식이다.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승낙하여도 계약이 성립되고, 그 반대로 매수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도인이 승낙을 하여도 계약은 성립된다.

(2) 매수인의 P/O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P/O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전에 거래관계가 전혀 없던 매수인이 매도인의 offer 정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자신이 희망하는 거래조건으로 매도인에게 P/O를 보내오거나 또는 이전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기존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매도인에게 보내오는 경우가 첫 번째이다. 이런 경우의 P/O는 구매청약(buying offer)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매도인은 거절을 할 수도, 침묵을 할 수도, 반대청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P/O에 대하여 주문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다. 만약 매도인이 매수인의 P/O를 승낙해 주었다면 매매계약은 성립된다.

두 번째는 매도인으로부터 Offer Sheet를 받은 후 Purchase Order를 보내오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의 P/O는 주문서(order sheet)이다. 이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이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매도인의 별도의 승낙이 없더라도 계약은 이미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낙의 과정을 통해서 주문서를 확인해 주는 것이 안전하다. 가끔씩 이런 과정을 생략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주문서를 승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다른 거래선을 찾는 경우도 있다.

CALICO Fashion Ltd.

463 seventh avenue, 5th floor
New York, NY
Tel : Fax :
www.johnfashion.com

PURCHASE ORDER

Messrs.
EC21 Co., Ltd.
11F, Trade Tower, Samsung-dong,
Gangnam-Gu, Seoul, Korea

P/O Number. : YU076SE
Date : Apr. 10, 2014

Description	Ladies 100 pct Polyester Knit Jacket, CAT. 635, HTSUS NO. 6102.30.2010 Style no.15189M
Quality	As per the sample no.JH102
Packing	Hanging container
Quantity	2,500pcs
Unit Price	US41.50
Amount	USD103,750.00
Price	FOB Busan Korea in USD/PC
Loading Port	Busan, Korea
Discharge	New York, USA
Insurance	Covered by Buyer
Payment	By an irrevocable at sight Negotiation L/C in favor of JUNGHYUN KOREA CO., LTD.
Shipment	05/25/14

Authorized by David Hirsch/President

4.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수출상인 매도인과 수입상인 매수인사이에 물품의 매매이행에 앞서 기본적으로 매매의 기본이 되는 조건들을 합의하여 문서로 작성해 두어야 후일에 발행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역의 기본조건이 명시된 문서를 일반거래조건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라고 한다. 이 협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범 주	구체적인 계약사항	
기 본 사 항	- 당사자(Principal) - 계약 확정문언	- 계약 체결일 - 계약 유효기간
상품자체사항	-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 가격조건(Terms of Price) -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계약이행사항	-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계약 불이행사항	-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 클레임조항(Claim Clause) -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정형거래조건 등	-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 준거법(Governing Laws)	

※ 무역계약의 5대 기본조건

- ①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 ②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 ③ 가격조건(terms of price)
- ④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 ⑤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 무역계약의 7대 기본조건:

5대 기본조건 +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Incoterms 2010 요약

E Group	<p>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 :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작업장, 공장, 창고, 농장, 판매장 등)에서 물품을 인도하며,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의 집화용 차량(collecting vehicle)에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도한다.</p>
F Group	<p>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2가지 인도조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carrier)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넘어간다.</p> <p>① Seller의 영업장 인도 : 매도인은 운송인의 운송수단에 적재해서 인도 ② 기타장소 인도 : 그 인도장소까지 물품을 운반한 매도인측의 차량에서부터 양화(unloading)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인에게 인도</p>
	<p>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 선적항 본선 선측에서 물품 인도</p>
	<p>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 본선에서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넘어간다.</p>
C Group	<p>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 : 목적항까지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매도인의 위험 부담은 본선에서 매수인에게 넘어간다.</p>
	<p>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조건) :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매도인의 위험부담은 본선에서 매수인에게 넘어간다.</p>
	<p>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때에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그러나 매도인은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모든 운송비를 부담해야 한다.</p>
	<p>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인도조건) : 운송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하보험에 부보할 의무를 진다는 것 이외에는 CPT조건과 동일하다.</p>
D Group	<p>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조건) : 계약물품을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 즉, 부두(quay), 창고(warehouse), container yard 혹은 도로(road), 철도(rail) or 공항터미널(air cargo terminal)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수입통관 의무는 매수인의 의무</p>
	<p>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 : 매도인은 수입통관비를 지급하지 않고 매수인의 지정된 장소까지 인도</p>
	<p>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 매도인은 수입통관비를 지급하고 매수인의 지정된 장소까지 인도. DDP는 EXW와 정반대되는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많은 조건이라 할 수 있다.</p>

대금결제

1. 무역결제방식

(1) 무역결제 방식의 의의

무역결제방식에는 크게 송금(T/T : Telegraphic Transfer), 추심(Collection),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결제방식으로 구분된다.

(2) 무역결제 방식

결제방식	시기	영문명칭	명칭
송금 T/T	CWO	<u>C</u> ash <u>W</u> ith <u>O</u> rd <u>e</u> r	사전송금
	COD	<u>C</u> ash <u>O</u> n <u>D</u> eliver <u>y</u>	상품인도
	CAD	<u>C</u> ash <u>A</u> gainst <u>D</u> oc <u>u</u> ment	서류인도
	O/A	<u>O</u> pen <u>A</u> ccount	건별외상
추심 Collectio n	D/P	<u>D</u> oc <u>u</u> ments <u>A</u> gainst <u>P</u> ayment	지급인도
	D/A	<u>D</u> oc <u>u</u> ments <u>A</u> gainst <u>A</u> cc <u>e</u> ptance	인수인도
신용장 L/C	Sight	At Sight	일람지급
	Usance	At ×× days after Sight	연지급

(3) 결제방식별 비교

결제방식	내용
송금 결제방식 (T/T)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직접 발송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직접 대금 청구 수입상이 약속한 날에 대금 송금 환어음(Bill of Exchange)이 발행되지 않는 거래 당사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 은행이 대금청구 및 결제에 개입하지 않는 거래
추심 결제방식 (Collection)	수출상 →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 → 추심은행(수입상 측) → 수입상에게 대금 청구 → 추심의뢰은행으로 결제
신용장 결제방식 (L/C)	수출상 → 지정은행(매입은행) nego → 개설은행(수입상 측) → 매입은행으로 직접 결제

※ 환어음

어음에는 크게 약속어음과 환어음 두 가지가 있다. 국내거래에서 사용하는 어음은 약속어음(Promissory Note : P/N) 이라고 하며 약속어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에 지급하겠다는 증서이다.

반면, 환어음(Bill of Exchange : B/E 혹은 Draft)은 무역거래에서 사용하는 증서로써 무역거래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수출상이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대금지급 청구서이며 대금지급 지시서이다.

Drawee : 수출상이 발행하는 환어음의 대금을 지급하는 자이며 신용장 방식에서 drawee는 개설은행 혹은 개설은행이 권한을 준 제3의 은행이 될 수 있다. 반면, 추심결제방식에서 drawee는 수입상이 된다.

※ 환어음 서식 예

(1) NO. 123456 (2) **BILL OF EXCHANGE** (3) APR. 1, 2015 SEOUL, KOREA

(4) FOR US \$28,836.25

(5) AT xxxx SIGHT OF **FIRST BILL OF EXCHANGE** (SECOND OF THE SA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 PAY TO (6) KOREA EXCHANGE BANK OR ORDER THE SUM OF

(7) SAY US TWENTY EIGHT THOUSAND EIGHT HUNDRED THIRTY SIX DOLLARS TWENTY FIVE CENT ONLY

(8) VALUE RECEIVED AND CHARGE THE SAME TO ACCOUNT OF Kalmax Garments FTY.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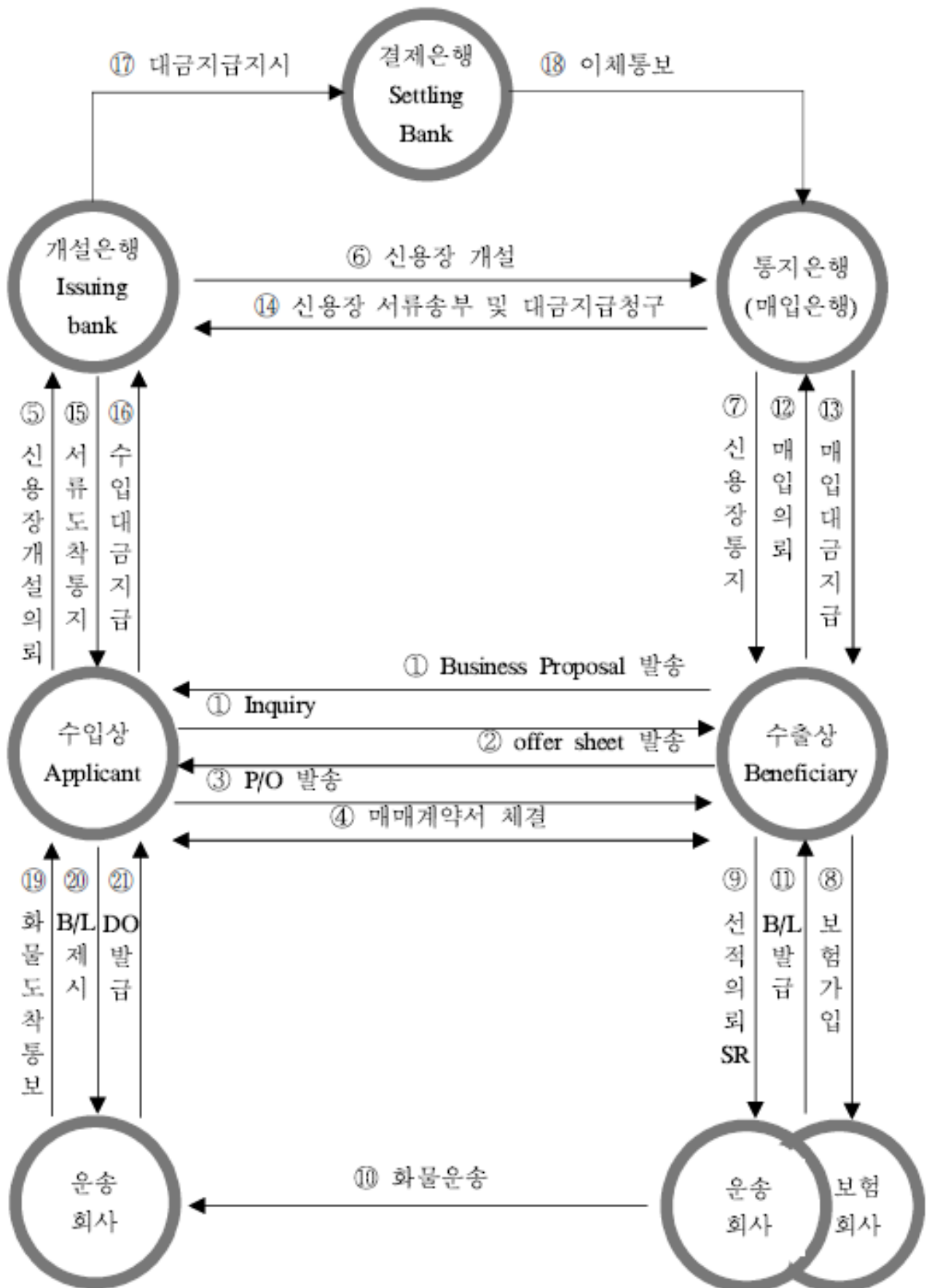
(9) DRAWN UNDER HSBC BANK HONG KONG

(10) L/C NO. MGK248186 (11) DATED 2014/03/20

(12) TO HSBC BANK HONG KONG MONGKOK OFFICE

(13) EC21 CO., LTD.

- (1)어음번호 (2)발행일 (3)발행지 (4)금액 (5)지급만기일 (6)수취인
 (7)문자금액 (8)개설의뢰인 (9)개설은행 (10)신용장번호
 (11)신용장발행일자 (12)지급인과 지급 (13)발행인의 기명날인



HAWOO CORPORATION
W.T.P.O. BOX 1010
Trade Tower 30F.
Kangnam-Ku, Seoul, Korea
TEL: 02-6000-5353 FAX: 02-6000-5161

SALES CONTRACT NO.123

DATE : June 10, 2007

MESSRS, PFISTER & VOGEL INC.
Los Angeles, U.S.A.

We as Seller confirm having sold you as Buyer the following good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as stated below and on the back hereof.

QUANTITY	DESCRIPTION	PRICE	SHIPMENT
10,000yards	Printed Synthetic Febric 44 x about 500yards 100% Acrylic Fast Color	CIF New York in U.S. Currency \$0.72	Aug. 2007

Total Amount : US\$7,200.00

PAYMENT : By a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at 90 days after sight in favour of you.

INSURANCE : Seller to cover the CIF price plus 10% against All Risks including War and SRCC Risks.

PACKING : About 500 yards in a carton box

DESTINATION : LOS ANGELES, U.S.A.

<SHIPPING MARK>

P&V

LOS ANGELES

BOX NO. 1/UP

MADE IN KOREA

PLEASE SIGN AND RETURN THE DUPLICATE

BUYER
PFISTER & VOGEL INC.
CORPORATION.
(Signed)

SELLER
HAWOO

(Signed)

David Jones
President

GIL DONG HONG
Export Manager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1. Principal to Principal Basis : This Contract Recognizes the fact that it is on a principal to principal basis between Seller and Buyer.
2. Quantity : Quantity is subject to a variation of five percent(5%) plus or minus at Seller's option.
3. Shipment : The date of Bill of Lading shall be taken as the conclusive date of shipment. Partial shipment and / or transshipment shall be permitted, unless otherwise stated on the face hereof.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non-shipment or late shipment in whole or in part by reason of Force Majeure, such as fires, floods, earthquakes, tempests, strikes, lockouts, and other industrial disputes, mobilization, war, threat of war, riots, civil commotion, hostilities, blockade, requisition vessel, and any other contingencies beyond Seller's control.
4. Price : The price(s) is (are) FOB Busan Korea basis. The freight and insurance premium shall be borne by Buyer.
5. Inspection : Inspection performed under the export regulation of Korea is final respect of quality and / or conditions of the contracted goods, unless otherwise stated on the face hereof.
6. Trade Terms : The trade terms used in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10 unless otherwise specially stated.
7. Infringement : Buyer shall hold Seller harmless from liability for any infringement with regard to patent, trade mark, design and/or copyright originated or chosen by Buyer.
8. Claim : Any claim by Buyer must be made in writing within fourteen(14) days of receipt of the goods at destination stated on the face hereof, and no claim will be recognized if they are used.
9. Arbitration :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Seller and Buyer,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10. Governing Law :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in all respects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